

## 지역주도 과학기술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안(대안)

의안 번호	18532
----------	-------

제안연월일 : 2026. 4.

제안자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 1. 대안의 제안경위

건명	의안번호	대표 발의자	발의일	회의정보
지역과학기술 혁신법안	2200095	박충권의원	2024.6.3.	- 제416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 회의(2024.7.16.)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과학기술원자력법안심사소위 회부 -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1차 과학기술원자력법안심사소위(2026.3.10.) 상정 및 축조심사
지역주도 과학기술혁 신 촉진에 관한 법률안	2216657	조인철의원	2026.2.9.	-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소위원회 직접 회부(2026.3.9.) -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1차 과학기술원자력법안심사소위(2026.3.10.) 상정 및 축조심사

가.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1차 과학기술원자력법안심사소위원회(2026. 3. 10.)에서 위 2건의 법률안을 병합하여 심사한 결과, 이를 통합·조정하여 우리위원회 대안을 마련함.

나.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 3. 11.)는 과학기술원자력법안심사소위원회가 심사·의결한 2건의 법률안을 각

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과학기술원자력법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의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2. 대안의 제안이유

수도권 일극 체제가 고착화되고 경제, 산업과 일자리가 점점 더 수도권으로 집중됨에 따라, 지역은 청년을 중심으로 인구가 지속적으로 유출되어 소멸 위기에 직면해 있음.

위기에 처한 지역이 다시 활력을 찾고 청년들이 지역으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는, 지역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신산업 창출의 핵심 동력인 과학기술 혁신이 지역 차원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 필수적임.

그러나 현행 국가 연구개발 정책은 중앙정부 주도의 획일적인 사업 구조와 수도권 중심의 연구 인프라 배분에 머물러 있어, 지역이 주도적으로 관련 정책과 사업을 추진하는 데 제도적·재정적 한계가 존재함. 이로 인해 지역의 연구개발 역량은 지역 산업과 효과적으로 연계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지역이 주체가 되어 지역 특성에 부합하는 과학기술 혁신 전략과 사업을 자율적으로 수립·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정부가 이를 행정적·재정적으로 뒷받침하는 체계를 구축하고자 함. 이를 통해 지역 산·학·연의 연구역량을 강화하고 우수한 인재가 지역에 정착할 수 있는 자생적 혁신 생태계를 조성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국가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3. 대안의 주요내용

가. 시·도지사는 5년마다 지역과학기술혁신계획을 수립하고, 정부는 계획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및 제7조).

나. 시·도지사는 지역과학기술 연구개발에 투자하는 목표치를 설정할 수 있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5년 단위의 지역과학기술 중장기 투자 혁신 전략을 수립하도록 함(안 제8조 및 제9조).

다. 시·도지사 소속으로 지역과학기술자문회의를 두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역별 과학기술 전담기관을 설치하거나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 및 제11조).

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책 수립 및 지자체 컨설팅 등을 지원하기 위한 지역과학기술 정책연구센터를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

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지역연구개발사업을 지정하여 특화된 평가를 실시하고, 시·도지사는 지역자체연구개발사업 및 초광역권연구개발사업을 기획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

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과학기술혁신 촉진 사업을 공동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과학기술 투자협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

사. 지역 연구역량 강화를 위하여 지역공공연구기관을 육성하고 지역거점연구기관을 지정하며, 지역 대학 및 지역기업연구소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함(안 제17조부터 제20조까지).

아. 관할 시·도 내 산·학·연 간의 협력을 촉진하고 그 성과가 지역 사회로 확산될 수 있도록 협력 사업을 추진함(안 제21조).

자. 전주기적인 지역과학기술인 양성 및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주거·교육 등 정주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노력하도록 함(안 제22조 및 제24조).

차. 지역과학기술 집적단지를 활성화하고 집적단지 상호 간의 연계와 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함(안 제23조).

카. 시·도지사는 과학기술을 활용하여 지역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불필요한 규제의 완화 및 해소를 건의할 수 있도록 함(안 제25조 및 제27조).

타. 지역과학기술정보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지역별 지표를 두어 관리하고 지역과학기술 수요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26조).

파. 지역과학기술자문회의의 위원, 전담기관 및 정책연구센터의 임직원 등에 대하여 「형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의 제함(안 제29조).

## 지역주도 과학기술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안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지역주도 과학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주도적·자율적인 연구개발을 지원하고 지역과학기술혁신을 위한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지역의 과학기술 경쟁력을 강화하여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이란 「지방자치법」 제2조제1호의 특별시·통합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관할 구역을 말한다.
2. “초광역권”이란 지역의 과학기술혁신 촉진 및 기반 조성에 필요한 연계·협력 사업 추진을 위하여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상호 협의하여 설정하거나 「지방자치법」 제199조에 따른 특별지방자치단체가 설정한 권역으로서 시·도의 행정구역을 넘어서는 권역을 말한다.
3. “지역과학기술”이란 지역 또는 초광역권을 기반으로 하는 과학기

술을 말한다.

4. “지역과학기술혁신”이란 지역과학기술과 관련하여 제6호에 따른 지역과학기술혁신 주체가 과학기술 연구개발 등을 통하여 과학기술혁신 역량을 확보하고 지역에 유용한 성과를 창출하는 일련의 과정을 의미한다.

5. “지역공공연구기관”이란 지역에 소재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단체를 말한다.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하여 운영하는 연구기관  
나.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에 따른 지역조직

다.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

라.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마. 그 밖에 지역과학기술혁신 활동의 필요성을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

6. “지역과학기술혁신 주체”란 지역 또는 초광역권에서 지역과학기술혁신을 수행하는 다음 각 목의 기관·단체를 말한다.

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산업대학·전문대학 또는 기술대학(이하 “지역대학”이라 한다)

나. 제5호에 따른 지역공공연구기관

다. 「상법」 제169조에 따른 회사 및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

라.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마.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과학기술 분야의 비영리법인

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과학기술혁신 및 연구개발·사업화 촉진 등과 관련되는 법인 또는 단체

7. “지역과학기술인”이란 지역에 거주하면서 이학·공학 등의 분야 및 이와 관련되는 학제간 융합 분야의 연구개발 및 기술혁신 활동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8. “지역연구개발사업”이란 중앙행정기관이 법령에 근거하여 예산 또는 기금으로 지원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을 말한다) 중 제7조에 따른 지역과학기술혁신계획 또는 「과학기술기본법」 제8조에 따른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 등의 효율적 추진 등 지역과학기술혁신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으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하는 사업을 말한다.

9. “지역자체연구개발사업”이란 지방자치단체가 단독으로 또는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협의하여 지방재정으로 지원하는 연구개발 사업을 말한다.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① 국가는 지역과학기술혁신에

필요한 환경과 기반을 조성하고, 지역 및 초광역권의 특성에 맞는 연구개발 및 그 성과의 확산을 지원하는 등 지역과학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재정 지원 및 규제 완화 등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정책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지역과학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을 주도적으로 수립하여 추진하고, 재정 지원 및 규제 완화 등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지역과학기술혁신 주체 및 지역과학기술인의 책임과 역할) ①

지역과학기술혁신 주체는 지역과학기술혁신 역량 강화 및 지역연구개발사업과 지역자체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노력하고, 소속 연구자를 지원하며, 지역과학기술혁신 성과가 지역사회에서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지역과학기술인은 자율과 책임을 바탕으로 성실하게 지역과학기술혁신에 필요한 활동을 수행하고 도전적으로 자신의 능력과 창의력을 발휘하며, 자신의 활동이 지역사회에 미치는 경제적·사회적 영향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지역과학기술혁신 촉진 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지역과학기술혁신 추진체계

제6조(지역과학기술혁신계획의 수립 및 조정) ① 특별시장·통합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과학기술을 통한 지역의 특성 있는 혁신과 발전을 위하여 관할구역 내의 지역과학기술혁신계획(이하 “지역과학기술혁신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가 지역과학기술혁신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의 과학기술정책과 연계성을 고려하여야 하며 「과학기술기본법」 제8조에 따른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 및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6조에 따른 지방시대 종합계획의 내용을 반영하고, 관할 시·군·구의 시장·군수 및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지역과학기술혁신 주체 및 지역과학기술인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하며, 제10조에 따른 지역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지역과학기술혁신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역과학기술혁신의 목표, 방향 및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
2. 지역의 특성과 여건을 고려하여 지역의 발전과 혁신을 위해 중점적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기술(이하 “지역중점기술”이라 한다)의 설정에 관한 사항

3. 지역과학기술혁신을 위한 투자 목표, 자원 확보 및 투자 전략에 관한 사항
  4. 지역과학기술혁신을 위한 연구개발사업의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지역과학기술 관련 주체의 역량 강화에 관한 사항
  6. 지역 내 연구개발 성과의 확산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사항
  7. 연구시설·장비 구축 및 운영, 과학기술 인력양성 및 교육훈련 등 지역과학기술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8. 제23조에 따른 지역과학기술 집적단지의 활성화 및 연계·협력 지원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④ 시·도지사는 지역과학기술혁신계획의 연도별 실행계획(이하 “실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제10조에 따른 지역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를 거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지역과학기술혁신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기본지침을 마련하고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시·도지사가 제출한 지역과학기술혁신계획 및 실행계획이 정부의 과학기술정책과 상충되거나 다른 시·도의 지역과학기술혁신계획 및 실행계획 등과 중복·충돌하는 경우,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 제7조에 따른 지방과학기술진흥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시·도지사에게 지역과학기술혁신계획 및

실행계획의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⑦ 제6항의 요청을 받은 시·도지사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⑧ 중앙행정기관 및 시·도지사는 이 법에 따른 연구개발사업(지역연구개발사업 및 지역자체연구개발사업을 포함한다)의 실시, 지역과학기술혁신과 관련된 주체의 육성·지원, 기반 및 환경 조성 등의 정책 추진 시 지역과학기술혁신계획을 고려하여야 한다.

⑨ 시·도지사가 지역과학기술혁신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협의한 후 제2항의 절차를 거쳐 변경된 지역과학기술혁신계획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⑩ 제5항의 기본지침, 제6항에 따른 지역과학기술혁신계획 및 실행계획의 조정, 그 밖에 지역과학기술혁신계획과 실행계획의 수립, 제출 및 변경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지역과학기술혁신계획의 추진 등) ① 시·도지사는 지역과학기술혁신계획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역과학기술혁신 관련 기금의 설치 또는 그 기금의 활용
2. 「지방재정법」 제11조에 따른 지방채의 발행
3. 「지방세징수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지방세의 징수유예

- ② 정부는 시·도지사가 지역과학기술혁신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시·도지사가 지역과학기술혁신계획을 수립하는 데 필요한 조사·연구 등을 지원할 수 있다.
- ④ 시·도지사는 매년 지역과학기술혁신계획의 추진실적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지역과학기술혁신계획 추진실적을 분석하여 그 결과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 제7조에 따른 지방과학기술진흥협의회에 제출하고, 해당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⑥ 시·도지사는 제5항에 따른 분석 결과를 관련 정책 및 사업 추진에 반영하여야 한다.
- ⑦ 그 밖에 지역과학기술혁신계획의 추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지역과학기술 투자 확대)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과학기술혁신에 관한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지역과학기술 관련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② 시·도지사는 지역과학기술 연구개발에 대한 전략적 투자 및 효율적인 사업 관리를 위하여 지역연구개발사업과 지역자체연구개발 사업을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3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지역연구개발

사업을 별도로 관리하고, 재정 지원 현황을 사업별·지역별로 파악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이를 매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역연구개발사업의 연구개발과제(「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연구개발과제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연구개발기관(같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연구개발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선정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과학기술혁신계획과 연계된 연구개발과제 및 연구개발기관을 우대할 수 있다.

⑤ 시·도지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여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고려하여 예산의 일정 비율을 지역과학기술 연구개발에 투자하는 목표치를 설정하여 공표할 수 있다.

⑥ 정부는 제5항에 따른 연구개발 투자 목표를 달성한 시·도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⑦ 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지역연구개발사업 및 지역자체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방법 및 제5항에 따른 연구개발 투자 목표 설정 및 공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지역과학기술 중장기 투자 혁신 전략 수립)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계획 등과 연계한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의 전략적 투자를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 단위의 지역과학기술 중장기 투자 혁신 전략(이하 “지역중장기투자

혁신전략”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62조에 따른 지방시대위원회의 의견을 청취하고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 제2조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이하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여야 한다. 지역중장기투자혁신전략을 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고자 하는 경우도 이와 같다.

1. 지역과학기술혁신계획
2. 「과학기술기본법」 제7조의2에 따른 국가연구개발 중장기 투자 전략
3. 「과학기술기본법」 제8조에 따른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
4.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6조에 따른 지방시대 종합계획

② 지역중장기투자혁신전략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역과학기술혁신을 위한 국가연구개발사업 투자 효율화 방안
2. 제13조에 따른 지역연구개발사업 및 제15조에 따른 초광역권연구개발사업 투자 효율화 방안
3. 지역연구개발사업 성과의 확산 및 국가연구개발사업과의 연계·활용 촉진에 관한 사항
4. 지역 간 과학기술 역량 격차 해소를 통한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사항

5. 제26조에 따른 지역별 지표 관리 및 자료 수집에 관한 사항
6.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연구개발특구,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별법」 제2조에 따른 지역특화발전특구 및 규제자유특구,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뿌리산업 특화단지 및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스마트도시 특화단지에 따른 특화단지 등과 연계한 지역과학기술 집적화 방안
7. 그 밖에 지역과학기술혁신을 위하여 필요한 전략적 투자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10조(지역과학기술자문회의) ① 시·도지사는 지역과학기술혁신에 관한 주요 정책 및 계획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도지사 소속으로 지역과학기술자문회의(이하 “지역과학기술자문회의”라 한다)를 둔다. 다만, 관할 시·도 또는 시·도지사 소속으로 유사한 자문기구가 있는 경우 해당 기구를 지역과학기술자문회의로 볼 수 있다.

② 지역과학기술자문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지역과학기술혁신계획 및 실행계획
2. 지역과학기술혁신 관련 주요 정책 및 사업
3. 지역과학기술혁신을 위한 재원의 확보 및 투자전략, 예산 배분

및 조정에 관한 사항

4. 지역과학기술혁신 기반의 구축 및 운영

5. 그 밖에 지역과학기술혁신에 관한 주요 사항

③ 지역과학기술자문회의는 의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지역과학기술자문회의의 의장은 부시장·부지사(해당 시·도에 부시장 또는 부지사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시·도지사가 지명하는 부시장 또는 부지사로 한다)가 된다.

⑤ 지역과학기술자문회의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지역과학기술혁신 활동 관련 경험과 전문지식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도지사가 위촉한 사람

2. 과학기술 분야에서의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고등교육법」 제59조의3에 따른 지역혁신대학지원위원회의 위원 중 시·도지사가 위촉한 사람

⑥ 제2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지역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조정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소회의를 둘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지역과학기술자문회의의 구성 및 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1조(지역별 과학기술 전담기관) ① 시·도지사는 지역과학기술혁신에 관한 정책·사업의 기획 및 관리, 조사·연구 등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역별 과학 기술 전담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을 설치 또는 지정(지역공 공연구기관 중에서 지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할 수 있다.

② 전담기관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지역과학기술혁신계획의 수립 및 조정, 추진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
2. 지역과학기술자문회의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3. 지역자체연구개발사업 추진의 지원에 관한 사항
4. 제20조에 따른 지역기업연구소 육성 및 유치의 지원에 관한 사항
5. 제22조에 따른 지역과학기술인 양성 및 활용 촉진의 지원에 관한 사항
6. 제23조에 따른 지역과학기술 집적단지의 활성화 및 연계·협력 지원에 관한 구체적 사항
7. 「과학기술기본법」 제26조에 따른 생산 및 유통체계 구축과 관련하여 관할 지역에 해당하는 자료 및 정보 등의 관리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지역과학기술의 혁신을 촉진하기 위하여 시·도지사가 별도로 정하는 사항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전담기관의 설치, 운영 및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④ 시·도지사는 전담기관이 제2항의 업무를 수행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협의하여 전담기관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전담기관의 설치, 지정, 지정취소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지역과학기술 정책연구센터)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지역과학기술혁신계획 또는 「과학기술기본법」 제8조에 따른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 등 지역과학기술혁신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제도의 마련 등에 필요한 조사·연구와 각종 데이터의 분석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정책·사업 지원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역과학기술 정책연구센터(이하 “정책연구센터”라 한다)를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책연구센터가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책연구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제1항의 업무 수행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④ 정책연구센터의 지정 기준·절차, 운영 및 지정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지역연구개발사업의 추진)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 추진계획 수립 시 지역과학기술혁신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연구개발과제를 선정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연구개발과제를 추진하기 위한 국가연구개발사업 중에서 지역과학기술 및 지역균형발전 정책과의 부합 여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고려하여 지역연구개발사업을 지정하여야 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역연구개발사업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지역연구개발사업에 대한 투자의 효과성 및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 등을 수행함에 있어 지역연구개발사업에 특화된 평가방안을 마련하고, 그에 따라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역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 외의 지역(이하 “수도권 외의 지역”이라 한다)에 소재하는 지역과학기술혁신 주체를 우선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지역자체연구개발사업의 추진) ① 시·도지사는 지역과학기술

자문회의의 심의를 거쳐 지역의 연구역량 강화와 특성 있는 발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또는 기금으로 지역자체연구개발사업을 기획하여 추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역자체연구개발사업에 대해서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9조부터 제18조까지 및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시·도지사”로 본다.

③ 시·도지사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역자체연구개발사업의 개별적 특성을 고려하여 제2항에 따른 규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준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지역자체연구개발사업 공모 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중 준용하지 아니하는 규정을 특정하여 공고하고, 대체할 규칙을 제정하여야 한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지역자체연구개발사업 추진 실적이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지역자체연구개발사업의 기획, 추진,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초광역권연구개발사업의 추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간의 지식·정보의 공유, 기술협력 및 융합 등을 위하여 초광역권연구개발사업(이하 “초광역권연구개발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할 수 있다.

② 시·도지사는 인접 시·도지사와 협력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초광역권연구개발사업 및 연구개발과제를 제안할 수 있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연구개발 수요를 조사하는 때에는 시·도지사로부터 초광역권연구개발사업 수요에 관한 의견을 청취하고, 같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추진계획 수립 시 초광역권연구개발사업 수요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④ 초광역권연구개발사업에는 사업의 목적과 본질을 벗어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13조를 준용한다.

⑤ 그 밖에 초광역권연구개발사업의 기획, 추진,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지역과학기술 투자협약)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이나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에 지역과학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내용 및 투자분담 등이 포함된 지역과학기술 투자협약(이하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약 중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협약의 경우,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필요한 예산의 편성 등 협약 이행 및 협약에 따른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과학기술기본법」 제7조의2에 따른 국가연구개발 중장기 투자전략의 수립 및 같은 법 제12조의2에 따

른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의 배분·조정 에 있어서 제1항에 따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협약을 반영할 수 있다.

⑤ 협약의 내용, 사업범위 및 체결 절차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3장 지역과학기술혁신 주체의 육성 및 지원

제17조(지역공공연구기관의 육성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의 연구역량 강화 및 성장 촉진을 위하여 지역공공연구기관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지역공공연구기관은 소재지의 지역대학 또는 기업과의 협력연구 및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필요로 하는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등 지역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8조(지역거점연구기관의 지정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관할 시·도지사 와 협의하여 해당 시·도에 소재하는 지역공공연구기관 중에서 지역거점연구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지역거점연구기관은 지역 내 연구개발, 연구인력의 활용 및 연구개발 성과의 확산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지역중점기술과 관련한 원천, 응용기술 개발 및 사업화
2. 지역 기업이 필요로 하는 기술문제의 해결

3. 지역의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연구개발
4. 우수한 지역과학기술인의 양성 및 활용 촉진
5. 연구시설·장비의 구축, 운영, 개방 및 활용 지원
6. 지역과학기술혁신을 위한 산·학·연 협력연구 및 네트워크 운영
7. 그 밖에 지역과학기술혁신을 위해 필요한 사업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거점연구기관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연구개발사업 및 지역자체연구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연구개발기관을 선정하는 경우 지역거점연구기관을 우대할 수 있다.

⑤ 지역거점연구기관은 매년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을 시·도지사와 협의하여 수립하고, 이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지역거점연구기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할 시·도지사와 협의하여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⑦ 그 밖에 지역거점연구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 사업계획 및 우대조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지역대학의 연구역량 강화)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연구개발, 인력양성 등 지역대학의 연구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8조에 따른 지역거점연구기관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지역대학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협력할 수 있다.

1. 지역중점기술과 관련된 기초 및 원천연구
2. 지역의 연구역량 확충을 위한 기초연구
3. 연구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
4. 연구인력의 안정적 연구 활동을 위한 지원사업

③ 시·도지사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협력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0조(지역기업연구소의 육성 및 유치)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수도권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의 연구소(이하 “지역기업연구소”라 한다)의 연구개발 역량 강화 및 성장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기술개발·기술 도입 및 도입 기술의 개량에 관한 조사·연구
2. 연구개발인력의 채용·양성 및 유지를 위한 교육훈련·연수 및 재정 지원
3. 연구시설·장비의 공동 활용
4. 특허 및 기술동향 등에 대한 정보 제공 및 분석
5. 그 밖에 지역기업연구소의 기술 관련 문제 해결을 위해 필요하다

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술 및 산업 환경 변화에 따라 발생한 지역기업연구소 공통의 기술 관련 문제 해결을 위한 연구개발사업을 기획·추진할 수 있다.

제21조(지역 내 산·학·연 협력의 촉진 등) ① 시·도지사는 관할 시·도 내 산·학·연 간의 협력을 촉진하고, 지역과학기술혁신 성과가 지역 사회에 확산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협동·융합연구 및 기술개발
2. 인력, 정보 등의 교류 및 협력 네트워크 구축
3. 연구 시설·장비 등의 공동 활용 및 서비스 지원
4. 기술이전, 연구성과의 검증, 산·학·연 협력 기술사업화 및 기술창업의 지원
5. 연구개발인력에 대한 교육훈련 및 재교육
6. 그 밖에 산·학·연 간 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산·학·연 간의 협력을 위한 사업을 시·도지사와 협의하여 공동으로 추진하거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산·학·연 간의 협력을 위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기존에 추진 중인 연구개발, 사업화 지원, 과학기술 인력양성, 연구 시설·장비의 구축·활용 등의 사업을 연

계하거나 통합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업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산업교육 및 산학협력 기본계획을 고려하여야 한다.

⑤ 시·도지사는 지역공공연구기관과 지역대학의 연구역량이 관할구역 내 지역기업의 기술 관련 문제 해결과 역량 강화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2조(지역과학기술인 양성 및 활용 촉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과학기술의 변화와 발전에 대응할 수 있도록 창의력 있고 다양한 재능을 가진 지역과학기술인을 양성·개발하고, 지역과학기술인이 지역에 정착하여 지속·안정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전주기적(全週期的)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실시하여야 한다.

1. 지역과학기술인의 중·장기적 수요 및 공급 전망의 수립
2. 지역과학기술인의 양성 및 공급계획 수립
3. 지역과학기술인에 대한 교육훈련, 재교육의 촉진
4. 지역과학기술인 양성을 위한 교육의 질적 강화 방안 수립
5. 지역과학기술인을 위한 안정적 연구환경 조성, 연구기반 구축 및 연구활동 지원
6. 지역과학기술인의 지역 내 취업·창업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

7. 우수한 과학기술 인재의 지역 유치 및 정착을 위한 지원
8. 그 밖에 지역과학기술인의 양성 및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술 및 산업 환경 변화에 따라 필요한 지역과학기술인을 양성하기 위하여 지역공공연구기관과 지역대학 간 공동교육과정, 연수, 학생 및 교원의 교류 등을 지원할 수 있다.
  - ③ 지역공공연구기관과 지역기업연구소는 신규 연구개발인력 채용 시 기관이 소재한 지역(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한정한다)에 있는 대학의 재학생이나 졸업생을 우대하여 채용하거나 연수기회를 제공하는 등 해당 지역인재(「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지역균형인재를 말한다)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3항에 따라 해당 지역 인재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노력한 지역공공연구기관과 지역기업연구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4장 지역과학기술혁신을 위한 기반 및 환경 조성

제23조(지역과학기술 집적단지 활성화 및 연계·협력)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4조에 따라 지정된 연구개발특구 또는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3조에 따라 고시된 산업기

술단지 등을 지역과학기술 집적단지(이하 “집적단지”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집적단지를 활성화하거나 상호 간의 연계와 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1. 집적단지 내 기업의 연구개발 투자 촉진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2. 집적단지 간 연계와 협력을 통한 연구개발 및 기술이전·사업화에 관한 사항
  3. 대학·연구소·기업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연구개발 및 기술이전·사업화에 관한 사항
  4. 연구장비·시설 등 기반의 구축·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지역 산업 및 기술 분야를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과학기술 인력의 양성 및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6. 집적단지에 입주한 대학·연구소·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재의 확보에 관한 사항
  7. 신기술·신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규제 및 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8. 주거, 교통, 교육, 문화생활 등 정주여건의 개선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집적단지의 활성화 및 연계·협력을 위한 사항
- ③ 지방자치단체는 지리적으로 인접하거나 육성하고자 하는 산업

및 기술 분야가 유사한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집적단지 간 연계·협력을 위한 정책 및 사업을 기획하여 추진할 수 있다.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집적단지의 육성을 위한 연구개발사업의 추진 시 중복 여부 및 연계·협력 가능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집적단지의 활성화 및 집적단지 상호간의 연계와 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실태조사, 진단 및 평가 등을 수행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결과를 제공할 수 있다.

⑥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5항에 따른 실태조사 등의 결과를 해당 집적단지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 및 정책 추진 시 고려하여야 한다.

⑦ 제5항에 따른 실태조사 및 그 밖에 집적단지의 활성화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4조(지역과학기술인 정주여건의 개선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과학기술인이 지역에 정착하여 지역과학기술혁신 활동을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주거·교육·문화생활에 필요한 정주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5조(과학기술을 활용한 지역문제 해결) ① 시·도지사는 과학기술을 활용하여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시·도가 직면한 경제적·사회적 문제(이하 “지역문제”라 한다)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는 지역문제를 발굴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는 경우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연구개발 수요 조사 시 지역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을 검토하고 시·도지사 및 협의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④ 정부는 시·도지사가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는 경우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6조(지역과학기술정보 생산 및 유통체계 구축 등) ① 정부는 「과학기술기본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과학기술 및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지식·정보의 생산·유통·관리 및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생산·유통·관리 및 활용 체계를 운영하는 경우 지역별 지표를 두어 관리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지역별 자료 수집 및 지표 관리를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장, 지역공공연구기관 및 지역 소재 연구개발기관의 장에 대하여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 요청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시·도지사는 지역의 산업 진흥과 경제 발전을 위해 필요한 과학기술을 발굴하고, 이를 정책 및 사업에 반영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지역과학기술 수요조사를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지역별 지표의 관리 및 제3항에 따른 지역과학기술 수요조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7조(지역과학기술 관련 규제 등의 개선) ① 시·도지사는 지역과학기술혁신에 지장을 초래하는 불필요한 규제를 점검·발굴하여 이를 완화하거나 해소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시·도지사가 건의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해관계자·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지역과학기술과 관련된 국내외 환경변화에 맞게 제도나 규정을 정비하여야 한다.

## 제5장 보칙

제28조(업무의 위탁) 이 법에 따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29조(별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지역과학기술자문회의의 위원, 전담기관, 정책연구센터 및 제28조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의 임원 및 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역과학기술자문회의 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이전 조례 등에 따라 설치된 시·도 또는 시·도지사 소속 지역과학기술자문회의(유사한 자문기구를 포함한다)의 위원은 남은 임기의 범위에서 이 법 제10조에 따른 지역과학기술자문회의의 위원으로 본다.